

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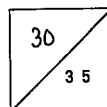
의안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제 의 자
55	25	1995. 11. 16	총재이경식

의안 「금융기관 표지어음 발행의 이율 및 부대조건」 개정

의결사항 「금융기관 표지어음 발행의 이율 및 부대조건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.

제외관계
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7조 및 제65조

제외취지 3단계 금리자유화의 일환으로 표지어음의 발행조건을 완화하고자
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



< 참고사항 >

제외관계 법규조항 발췌

한국은행법 제7조

- ① (생 략)
- 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, 운영,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.
- 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, 지시를 발할 수 있다.

④ ~ ⑥ (생 략)

한국은행법 제65조

-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기타 지급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「금융기관 표지어음 발행의 이율 및 부대조건」 개정(안)

현	행	개	정	(단)	비	고
1.	발행청서 : 각 금융기관이 할인·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 또는 무역어음(이하 "원어음"이라 한다)을 분할 또는 통합한 표지어음을 할인식으로 발행		(현행과 같음)			
2.	최고이율 :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		(현행과 같음)			
3.	만 기 원어음의 잔여만기 이내에서 30일이상 180일이내(중도환매 불가) 다만, 잔여만기가 30일 이상인 수개의 원어음을 통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180일이내에서 각 원어음의 잔여만기중 최장만기 이내		(현행과 같음)			
4.	최저발행금액 : 1천만원		최저발행금액 5백만원			- 최저발행금액 인하 (1천만원 → 5백만원)
5.	금융기관별 발행한도 (월평균 발행잔액 기준) : 전월중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 할인 평균잔액에서 일변태출 평균잔액을 차감한 금액의 50% 이내		(현행과 같음)			
6.	실시일자 : 1995. 7. 24 다만, 위의 5. 금융기관별 발행한도는 1995. 8. 1부터 실시		실시일자 : 1995. 11. 20			- 실시일자 명시